

## 「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11월 23일, 장문혁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21년 12월 16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장문혁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기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중 거주기한 2년을 1년으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지원대상 중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외 이혼을 추가함(안 제3조제2항)
- 지원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변경(안 제5조제3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- 본 조례안은 기존 「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」의 지원금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 
-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 
안 제3조제1항에서는  
지원대상의 요건 중 하나인 거주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,  
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요건을  
부 또는 모로 변경  
안 제3조제2항에서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 
부모가 사망한 경우 외 이혼을 추가  
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원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 
변경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  
- 기존 조례 상 2년의 거주기간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길게  
규정되어 있으며,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  
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, 한부모가족의 경우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 
있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
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있습니다.  
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1년”로, “부모”를 “부 또는 모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2년 미만”을 “1년 미만”으로, “2년이”를 “1년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망한”을 “이혼 또는 사망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30일”을 각각 “6개월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